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☐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40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
☐ **변경 사항** : ①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②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③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기재 보완

☐ **효력발생일** : 2022. 11. 16.

☐ **변경 내용**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 **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**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**2022. 9. 30. 기준**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**2022.10.31. 기준**
투자자 유의사항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 **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**

		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**기구의 경우 2 년)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**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매입방법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17 시 이전(경과후): 제 4(5)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	17 시 이전(경과후): **4(5)영업일** 기준가격으로 매입
환매방법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17 시 이전(경과후): 제 4(5)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 8(9)영업일에 지급	17 시 이전(경과후): **4(5)영업일** 기준가격으로 **8(9)영업일**에 지급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연혁]	연혁 업데이트	-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〈신 설〉	-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**2022.06.30** **- 자투자신탁 추가** **트러스톤 TDF2030 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** **트러스톤 TDF2040 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** **트러스톤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** **트러스톤 TIF 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**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**2022. 10. 31. 기준**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**2022. 10. 31. 기준**
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]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2) 자산유동화증권 :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가) (생 략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생 략) -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2) 자산유동화증권 :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	-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2) 자산유동화증권 : **〈삭 제〉** 가) (현행과 같음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**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 4-54 조 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 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**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-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2) 자산유동화증권 : **〈삭 제〉**
	오기 정정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3) 어음 가) (생 략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	**3) 양도성예금증서** 가) (현행과 같음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**로 하며, 금융투자**

		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생 략) 다) (생 략)	**업규정 제 4-54 조 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 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**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다) (현행과 같음)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제한]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,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2) 동일종목투자 :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. 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	-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,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2) 동일종목투자 : **〈삭 제〉** **〈삭 제〉**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. 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**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 4-54 조 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 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**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

		① ~ ⑤ (생 략) (나) (생 략)	봄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(나) (현행과 같음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. 특수위험	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기재 보완	〈신 설〉	**증권대여위험 : 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,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** **증권차입위험 : 이 투자신탁의 운용 전략에 따라 투자증권을 차입할 경우, 차입 자산을 공매도(short selling)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,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(매도가-매수가)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**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	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

		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	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 년**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**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 년**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**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7 시[오후 5 시] 이전(경과 후) : 제 4(5)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	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7 시[오후 5 시] 이전(경과 후) : **4(5)영업일**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17 시[오후 5 시] 이전(경과 후)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	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17 시[오후 5 시] 이전(경과 후)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

		터 제 4(5)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8(9)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5) 환매제한 제 7 영업일 이전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 8 영업일 이전)	터 **4(5)영업일**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**8(9)영업일**에 환매금액 지급 5) 환매제한 **7 영업일** 이전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**8 영업일** 이전)
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대차대조표	**재무상태표**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주 3)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(2021.5.11~2022.5.10)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. 〈신 설〉 〈신 설〉 〈신 설〉	주 3)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(2021.5.11~2022.5.10)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. **이 투자신탁에서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증권거래비용은 819,824 원입니다.** *** 증권거래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: 주식 · 채권 · 수익증권 · 파생상품 · 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(단,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)** **주 6) 금융비용은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, 직전 회계연도(2021.5.11~2022.5.10)**

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**에 발생한 금융비용은 12,998 원 입니다. 2022. 9. 30. 기준**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**2022. 10. 31 기준**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**2022. 10. 31 기준**
3.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(신탁업자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1) 주요업무 (생 략) -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	(1) 주요업무 (현행과 같음) -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, **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** 등의 확인업무
5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	사명 변경	KIS 채권평가주식회사	**KIS 자산평가주식회사**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 등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제 5 영업일	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**5 영업일**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. 임의해지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1)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	(1)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

		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① ~ ② (생 략) ③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(2) ~ (3) (생 략)	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년**(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**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**(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**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(2) ~ (3) (현행과 같음)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2)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 ·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의 본 · 지점,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	(2)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 ·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의 본 · 지점,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

		니다. ① ~ ⑦ (생 략) ⑧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(생 략)	니다.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년**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**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**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**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(현행과 같음)